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39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가. 제정의 필요성	3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6
2. 주요 조문별 검토	7
가. 정의규정(안 제2조)	7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및 제5조)	12
다.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안 제6조)	15
라. 이주배경학생 균형 배치 및 밀집학교 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19
마. 학교 운영의 자율성 부여(안 제9조)	23
바. 교원의 전문성 강화(안 제10조)	27
※ 참고자료: OECD 국가의 이주민 분산·통합 관련 정책 현황	2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6. 30.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입학·전학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발생하는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이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한국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어학급의 운영 등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교육감은 특정 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이주배경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밀집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밀집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IV.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의 필요성

□ 이주배경학생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경험을 가진 학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¹⁾, 종전의 국제결혼가정 중심의 다문화학생 개념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용어임.

2026년 이주배경학생 수는 210,838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공교육 진입이 초등 단계에 한정되지 않고 전 학교급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적응 및 수업 참여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밀집지역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지도,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등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²⁾.

< 연도별 이주배경학생 현황 >

(단위: 명)

연도	전체	내국인		외국인
		국내출생	중도입국	
2026년	210,838	138,736 (65.8%)	13,540 (6.4%)	58,562 (27.8%)
2025년	202,208	136,592 (67.6%)	12,740 (6.3%)	52,876 (26.1%)
(중 략)				
2012	46,954	40,040 (85.3%)	4,288 (9.1%)	2,626 (5.6%)

자료: 교육기본통계(매년 4.1. 기준)

1) 김희주·김혜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제25호, 인천연구원, 2024, pp. 69-110.

< 최근 3년간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현황 >

(단위: 교)

구분		‘26	‘25	‘24
밀집학교 수		163	123	100
이주배경학생 밀집도	90% 이상	5	4	4
	70% 이상 90% 미만	18	17	14
	50% 이상 70% 미만	29	25	18
	30% 이상 50% 미만	111	77	64

자료: 4.1. 기준 교육기본통계, 전교생 100명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 30% 이상인 학교

- 이에 제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및 기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밀집학교에 대한 인력·재정 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이주배경학생과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주배경학생 수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밀집학교에 필요한 인력·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는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어교육 등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운영 및 이에 필요한 경비·인력 지원, 이주배경학생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

2) 한국교육개발원,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2023.

원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이미 두고 있음. 제정안은 실태조사(안 제5조), 한국어학급 운영 등 맞춤형 교육지원(안 제6조) 등 현행법상 지원체계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현행 「초·중등교육법」과의 기능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유사·중복 조문 >

구분	제정안	현행 「초·중등교육법」
실태조사	안 제5조	제28조의2제2항
특별학급 설치·운영 (한국어학급)	안 제6조제1호	제28조의2제4항

- 한편, 제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균형 배치, 밀집학교의 지정·지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 및 밀집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임용·전보 제한 등 현행 학교 배치 및 교육과정·교원 인사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개별 조문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11개의 본칙,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본칙(11개 조문)	
제1조(목적)	제7조(이주배경학생의 균형 배치)
제2조(정의)	제8조(밀집학교에 대한 지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9조(학교 운영의 자율성 부여)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5조(실태조사)	제11조(협력 체계 구축)
제6조(맞춤형 교육지원의 실시)	
☐ 부칙(1개 조문)	
시행일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규정(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배경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나.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 2. “밀집학교”란 학교 중 전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학생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 현재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하여 지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제1호 가목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³⁾의 자녀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제1호 나목에는 외국인 학생을 명시하여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을 포괄하고자 하였음. 동시에 제1호 다목에서는 향후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을 통해 비교적 유연하게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이주배경 학생의 유형 및 특성 >

구분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국내출생	중도입국(해외출생후)		중도입국	국내출생
배경	부모	한국인-외국인	한국인-외국인	한국인-외국인(재혼)	외국인-외국인	
	출생	한국	외국		외국	한국
국적		내국인	내국인 (결혼이후생)	외국인 (결혼이전생)	외국인	외국인
한국어 역량		○ (대체로 높음)	△ / X (입국시점따라다름)	X (대체로 낮음)	X (대체로 낮음)	△ (한국어역량 보유 경우 有)

자료: 교육부

제2호는 현재 교육부가 전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밀집학교’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의 정의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제정안은 이주배경학생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제3호에서는 공교육 진입 지원을 교육지원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의규정의 범위와 실제 지원하려는 대상 간에 차이가 있는바,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학생의 정의에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4)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이주배경 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이주배경 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생뿐만 아니라 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둘째, 제정안은 전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학생의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밀집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주배경학생의 증가 추세와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 학교별 학생 구성 및 교육적 여건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밀집학교의 기준을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주배경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집학교의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지역별로도 이주배경학생의 규모와 분포 등 교육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이주배경학생 현황 >

(단위: 명)

연도	전체	내국인		외국인
		국내출생	중도입국	
2026년	210,838	138,736 (65.8%)	13,540 (6.4%)	58,562 (27.8%)
2025년	202,208	136,592 (67.6%)	12,740 (6.3%)	52,876 (26.1%)
(중 략)				
2012	46,954	40,040 (85.3%)	4,288 (9.1%)	2,626 (5.6%)

자료: 교육기본통계(매년 4.1. 기준)

< 2025년 시·도별 이주배경학생 수 >

(단위: 명)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이주배경 학생 수	22,002	8,001	6,553	15,005	5,403	3,959	4,076	886	56,961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이주배경 학생 수	5,249	8,117	14,004	9,244	11,290	13,196	14,833	3,429	202,208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며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또한, 학교 현장의 운영 부담은 이주배경학생의 비율뿐만 아니라, 이주배경학생 구성의 다양성, 학교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학교현장의 운영 부담 상황 예시 >

-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11%이나 특정 학과나 특정 학년의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50%를 넘는 학교
-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20%이나 전체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이다 보니 외국인 학생 수가 200명이 넘어서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30% 미만이나, 특정 국가나 언어권(러시아권, 아랍권 등) 이주배경학생이 몰려 있어 이주배경학생이 한국어 습득이나 한국 문화 적응에 의지가 낮아 교육이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 학생 수는 100명 미만이지만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학생이 50%가 넘는 학교
- 학교 인근 공단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 1~2년 새에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등

자료: 교육부

따라서 법률에서는 밀집학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밀집학교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이주배경학생의 증가 추이, 지역 여건 및 학교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제정안 제2조제1호의 ‘이주배경학생’ 정의에는 학교 입학 안내 대상 연령의 외국인 아동이 제외되어 있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므로,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포함하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제2호는 ‘밀집학교’를 이주배경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나,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학생지도 부담은 이주배경학생의 수와 비율, 학

교급, 이주배경학생 구성의 다양성 및 지역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법률에서 밀집학교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교육감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밀집학교를 지정·운영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및 제5조)

제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밀집 현상 완화 및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한국어 역량, 교육 수요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맞춤형 교육지원 내용, 밀집 현상 완화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한국어 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음.

□ 이주배경학생은 학교급·지역·유형(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등)에 따라 교육 격차, 한국어 능력, 진로·진학 등에서 요구되는 지원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교육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황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다양한 교육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한국어 역량, 교육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의 유형, 규모,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도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으므로⁵⁾,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연령·성별·국적·입국경위·출생지·거주지 및 다문화학생등 학부모의 국적 현황
2.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운영 현황
3.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력 및 시설 현황
4. 다문화학생등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다문화학생등,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다문화

향후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현행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두어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삭제하고 제정법률에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함
- 다만, 기본계획의 주요 실행 주체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본계획이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수립·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함
- 다만, 실태조사의 목적을 기본계획 수립에 한정하기보다는 기본계획 수립 등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추진까지 포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교육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다문화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맞춤형 교육지원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한 한국어학급의 운영 2.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프로그램 보급 등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3. 공교육 진입 지원 및 심리·정서 상담 지원 4.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 교육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특화된 현장 실습 및 취업 교육 지원 5. 조기 적응 지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 제도 안내 및 교육 지원 6. 그 밖에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어학급 운영,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프로그램 보급 등 한국어 교육 지원, 공교육 진입 및 심리·정서 상담 지원, 진로·현장실습·취업 교육 지원, 조기 적응 지원 및 학부모 대상 안내·교육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주배경학생은 국적,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및 기간 등에 따라 학교 적응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내용과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별로 필요한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프로그램 보급’⁶⁾ 등 구체적인 한국어교육 지원과 그 밖에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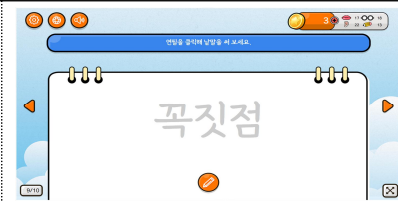
6) 현재 교육부가 시행 중인 ‘모두의 한국어’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단과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온라인 서비스로서, 개별 학생의 수준에 따른 학습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한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⁷⁾ 등에 따라 이주배경 학생은 출입국·외국인등록의 사실증명 또는 일정한 서류의 제출을 거쳐 초·중등학교에 자유롭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학과 관련된 정보 부족, 까다로운 서류 요건과 절차,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학교장 재량에 따른 입학 거절 등으로 인해 이주배경학생은 입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⁸⁾.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28조⁹⁾에서 규정

< 모두의 한국어 학습 예시 >

		
AI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말하기 학습 기능	AI 필기 인식 기술을 활용한 쓰기 학습 기능	학습자의 학습데이터 및 성취도 분석 관리

자료: 교육부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8) 김희주·김혜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25호(2024.6.), 인천연구원, 2024, 쪽 88-93

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 초등교육의 의무성과 중등교육의 접근 가능성 확대에 따를 때, 제정안 제6조제3호와 같이 이주배경학생에게 공교육 진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중 한국어학급(특별학급) 운영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¹⁰⁾, 심리·정서 상담 지원¹¹⁾, 진로교육, 현장실습 및 취업교육¹²⁾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을 포함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을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0) 교내에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5명 이상인 경우 별도의 학급을 설치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통합교과(음악, 미술, 체육 등)는 원적학급에서, 원적학급 외 교과 시간에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임.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④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2) 「진로교육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맞춤형 교육지원의 내용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법률에는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정함
- 아울러 안 제6조제4호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바,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법률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경우 역차별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이주배경학생 균형 배치 및 밀집학교 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제 정 안
제7조(이주배경학생의 균형 배치) ① 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이주배경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치 계획에는 신규 입학·전학 학생을 인근 학교에 균형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밀집학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집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교원 추가 배치 2. 한국어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등 보조 인력의 채용 확대 3. 밀집학교 특성을 고려한 이주배경학생의 강점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지정 및 예산 지원

□ 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신규 입학·전학 이주배경학생을 인근 학교에 균형 배치하는 등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밀집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추가 배치, 한국어 강사 채용 확대 등을 포함한 재정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최근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되는 경우 학생 간 한국어능력 격차 및 다양한 배경언어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등 학교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현황 >

(단위: 교)

구분		'26	'25	'24
밀집학교 수		163	123	100
이주배경학생 밀집도	90% 이상	5	4	4
	70% 이상 90% 미만	18	17	14
	50% 이상 70% 미만	29	25	18
	30% 이상 50% 미만	111	77	64

자료: 4.1. 기준 교육기본통계, 전교생 100명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 30% 이상인 학교

이러한 점에서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밀집학교에 대한 인력·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¹³⁾. 이에 비해 제정안은 교육감이 별도의 이주배경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신규 입학·전학 학생을 인근 학교에 균형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주배경학생에게 별도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다른 기준에 따라 배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학생과 보호자가 희망하는 거주지 인근 학교로의 진입이 제한

1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될 수 있음.

또한 이주배경학생을 분산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를 초래하고 이주민과 내국인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배치계획을 통하여 학생을 균형 배치하는 방안보다는, 교육부가 제시한 해외 사례와 같이 학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밀집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분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¹⁴⁾.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제7조) 신중검토

-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경우 학생 간 수업 이해도의 편차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학생 생활지도에도 부담이 크므로, 안 제6조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안 제8조에 따른 밀집학교 지원 및 안 제9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다만, 이주배경학생의 밀집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 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곤란함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은 이주배경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 학생의 주거지는 부모의 직장과 경제적 여력 등에 따라 정해지고 학교 배치가 학생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이주배경학생을 문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낙인효과와 함께 이주민과 내국인 간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 2026년 5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감이 밀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캐나다와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추가 교사 배치, 특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이주배경학생의 자발적인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14)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OECD 국가의 이주민 분산·통합 관련 정책 현황’ 참조

(제8조) 일부수정

-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하여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크므로 이러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밀집학교’라는 정책용어는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 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점지원학교’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교원 추가 배치의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는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한국어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등 보조인력’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언어 강사’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 다문화언어 강사는 한국어교육 및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는 강사를 모두 포괄함

○ 시·도교육청15): 신중검토

마. 학교 운영의 자율성 부여(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학교 운영의 자율성 부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밀집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밀집학교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아닌 학생의 통합 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안은 밀집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밀집학교 근무를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하여 일정 기간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하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주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아닌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집학교는 학생 간 한국어능력의 격차가 크고 언어·문화적 배경도 다양하여, 일반 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운영방식만으로는 학생별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교육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도 경험을 갖춘 교원을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학교 내에 축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밀집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교별 학생 구성과 교육여건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밀집학교 근무를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학교에 필요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¹⁶⁾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집학교의 경우, 학생 간 한국어 능력 격차 등으로 인해 이러한 일반적 자율성만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있는 점은 인정됨.

16)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발췌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지나치게 폭넓게 허용할 경우 교육의 질 관리 및 국가 교육과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조정 범위는 일정한 기준 하에서 제한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범위 내에서 일부를 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¹⁸⁾, 이와 유사하게 이주배경학생의 교육과정 조정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근무 예정 지역 또는 학교를 미리 정하여 교사를 채용하고 일정 기간 다른 지역 또는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¹⁹⁾, 해당 규정에서 전보 제한 여부를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한 것과 달리, 제정안은 밀집학교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된 교원의 전보를 의무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교원의 전문성 축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밀집학교의 교육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9)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일정 기간 전보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교원이 해당 학교로의 임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학교의 학생 구성이나 인력 수요가 달라지더라도 교원 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별도 임용 규정의 필요성과 함께 전보 제한의 기간·예외 및 수당 등 유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이주배경학생 재학 비율이 높거나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다수인 학교는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크므로, 학생의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밀집학교 근무를 위한 교원을 별도로 임용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임용’은 신규 채용과 전보 등을 포괄하므로 새로운 구분 채용제도의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보 제한은 교원의 밀집학교 근무 기피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교원 수당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주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아닌 학생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환경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성되어야 하므로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가교육위원회: 일부수정

-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주배경학생이 언어·사회·역사·문화 등 국가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충실히 학습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가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합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은 오해와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바. 교원의 전문성 강화(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 2.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및 밀집학교 현장실습 확대 3. 밀집학교 장기근무 교원에 대한 연수 및 해외 교류 등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연수 운영,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및 밀집학교 현장실습 확대, 밀집학교 장기근무 교원에 대한 연수 및 해외 교류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간 한국어능력의 편차와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업과 평가를 운영하는 한편, 학생·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통·번역 및 관련 행정업무와 체류자격을 고려한 진로지도 등도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²⁰⁾.
- 이에 직무연수 운영과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하여 교원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전문성을 높이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

20) 교육부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파악한 밀집학교 교원의 주요 어려움은 ① 실질적인 한국어교육 등에 관한 연수 부족, ② 학생·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통·번역 및 관련 행정업무 증가, ③ 학부모의 한국 교육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④ 학생 간 한국어능력 편차로 인한 수업 난이도와 평가기준 설정의 어려움, ⑤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학생 간 갈등 가능성, ⑥ 외국 국적 학생의 체류자격을 고려한 진로지도의 부담, ⑦ 이주배경학생 교육과 이주배경학생이 아닌 학생의 교육을 병행하는 데 따른 업무 부담 등임(교육부 제출자료).

한 것으로 보임. 특히 교원양성 단계부터 현직 교원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언어·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업·생활지도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라 직무연수와 밀집학교 현장실습이 확대될 경우,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는 연수 참여에 따른 부담이,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예비교원의 지도·관리에 따른 부담이 추가될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책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할 때에는 학교와 교원의 여건을 고려하고, 연수 참여에 필요한 시간과 대체인력 및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대응하여 교원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4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은 학교 분리(school segregation)에 대응 정책 운영 중

1 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

- **(정보 제공)** 이주민이 보다 나은 조건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와 정보 제공(예시 : 룩셈부르크는 학교 안내 책자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
- **(재정 지원)** 학생 특성을 고려해 학교에 재정지원을 하여 학교에서 이를 고려해 다양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유도
- **(쿼터 등 적극적 조치)** 학생을 선발할 때 이주민에 대한 쿼터 제시
※ 스웨덴의 사립학교는 쿼터(최대 5%) 내에서 2년간 입국한 이주민을 우선 선발 가능
- **(분산 배치)** 분산배치의 자발성에 따라 정책 효과 상이
※ 자발적 분산 → 긍정적 결과, 강제적 분산 → 반발 등 부작용 우려

■ (미국) 자발적으로 분산에 참여한 소수자 학생의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강제이전(busing)으로 학교별 학생의 구성을 바꾸려는 시도는 부정적인 영향 나타남

2 분리의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 **(교육과정)** 분리학교에 수요가 높은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매력도 증진(국내 출생 학생 유치)

■ (터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유치하고 다문화 이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선택과정으로 Living Languages and Dialects 운영

■ (미국) (인종간) 분리 학교를 마그네틱스쿨(Magnet School)로 전환하여 다양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운영

- **(추가 지원)** 분리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학교에 추가 지원

■ (캐나다) 신규입국한 이주민이 많은 학교에는 연방정부 지원으로 정착지원 인력, 학교등록 정보, 오리엔테이션, 언어학습, 상담과 동료지원 등 지원

■ (프랑스)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취약지역을 교육우선 지역으로 지정·지원하며 교육의 질을 높 이려는 방안(추가 교사 배치, 근무교원에 대한 추가인센티브 등 포함)

21) 자료: 교육부